

2015 회계연도
삼척시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삼 척 시

목 차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4
2. 노인복지기금 -----	10
3. 장애인복지기금 -----	16
4. 재난관리기금 -----	21
5. 식품진흥기금 -----	28
6. 성평등기금 -----	31
7. 농어업소득기금 -----	37
8. 옥외광고정비기금 -----	42

2015회계연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 조례제정일 : 1995. 1. 7. (삼척시조례 제 0085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61	14	10	4	665	10	30	△20	

II. 분석결과

1. 총 평

2015년 추진 실적

신청자	결정대상자	지급금액	비고
14명	5명	10,000,000원	타 장학금 수혜자 8명, 성적미달 1명으로 총9명 제외

사업 효과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장래 학구열을 고취시켜 탈 빈곤 및 자활기틀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 **잘된 점**

-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구 자녀에 한하고 있으며 일반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일반장학금 제도는 물론, 예체능계 경연 대회 입상자나 선행을 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타 장학제도와 차별을 두고 있음.
-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및 결산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 및 기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하였으며 2013년부터 장학금 1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함.

□ **미흡한 점**

- 2012년도 국가장학금 제도(한국장학재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원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향후 개선 방향**

- 적극적 사업 홍보와 장학금지원의 공정성 및 균등한 수혜기회 보장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여부 의뢰확인
- 이중수혜자 방지 및 국가장학금 제도 보완을 위해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 검토(2016년 지급시기 12월⇒ 10월)

2. 사업운영의 성과

□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28	70%	40	10	25%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40백만원, 20명	○ 28백만원, 14명	70%
'15년	○ 40백만원, 20명	○ 10백만원, 5명	25%

※ 연도별 지원대상 현황

- '08년 43명, '09년 11명, '10년 14명, '11년 11명, '12년 6명, '13년 4명, '14년 14명, '15년 5명
-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제도 신설 및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국가장학금 제도실시로 지원대상자 감소 추세임
- 현재 국가장학금제도는 타장학금과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며, 일정 성적(C학점이상)과 소득기준 2분위(저소득층)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선택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기여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1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 기금 사업의 예산 편성 수행 여부 : 현행 유지 또는 기금통합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75,301,438원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고, 기탁이나 성금 등의 재원의 적립성과 신축적 집행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운용 하는 것이 적정함.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20,000,000원	일반회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17,000,000원	일반회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113,000,000원	일반회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자가 타 사업과 다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단위 : 천원, %)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629,582	%	688,758	%	675,301	%	
	전입금	50,000	8	50,000	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2,295	89	621,582	90	660,758	98	
	예수금							
	이자수입	17,287	3	17,176	3	14,543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29,582	%	688,758	%	675,301	%	
	비용자성사업비	8,000	1	28,000	4	10,0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21,582	99	660,758	96	665,301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정 의무적 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일몰제 적용으로 현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의 본격적 실시로 지원대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이자수입으로 인하여 매년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도 되지 않아 사업비 충당에 문제가 있어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삼척시 향토장학금과 통합하거나,
- 다른 측면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삼척시의 타 장학 사업과는 기준 조건과 지원 대상이 달라 차별성 있으므로 기금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향후 장학금 존치여부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 기금 존속기한 연장시에는 장학금지원의 공정성 및 균등한 수혜기회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의 사기진작 및 실질적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2015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삼척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노인복지증진
- 설치년도 : 1996년 1월 3일(조례제정일 1996년 1월 3일 조례 제0170호,
개정 1998년 9월 21일 조례 제0260호)
- 조성기간 : 1997년 ~ 2005년 (5억원)
- 조성재원 :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6	14	15	△1	555	17	17	0	55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1) 노인대학운영등 4개사업 15백만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노인들의 여가생활 증대, 노인복지증진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사)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개사업 (노인대학운영,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참가, 노인친선게이트볼대회 개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운영비 지원)추진 10.6백만원

- 도계장로교회 (노인대학운영) 1.4백만원
- 삼척제일교회 (노인대학운영) 1백만원
- 삼척종합사회복지관 (한글교실 운영) 2백만원

○ **향후 조치계획**

- 시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하락으로 사업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후원모금등을 통하여 기금조성을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기금존치 필요성 총괄설명**

- 기금설치목적이 적정하고 일반회계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지금까지 많은 재원이 투자된 노인대학운영사업은 강원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타 사업운영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느정도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	44	98%	45	15	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
(5개사업이 본 사업목표를 위하여 수행되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9개사업 (28,285천원, 6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사업 (6,480천원, 32회) ○ 삼척제일교회 1개사업 (5,410천원, 28회) ○ 삼척종합사회복지관 1개사업 (4,800천원, 13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9개사업(28,283천원, 610명) ○ 도계장로교회 1개사업 (6,480천원, 32회) ○ 삼척제일교회 1개사업 (5,210천원, 28회) ○ 삼척종합사회복지관 1개사업 (4,000천원, 135회) 	98%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4개사업 (10,610천원, 24회 /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사업 (1,400천원, 34회) ○ 삼척제일교회 1개사업 (1,000천원, 24회) ○ 삼척종합사회복지관 1개사업 (1,930천원, 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4개사업 (10,607천원, 25회 /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사업 (1,400천원, 36회) ○ 삼척제일교회 1개사업 (1,000천원, 24회) ○ 삼척종합사회복지관 1개사업 (1,930천원, 23회) 	3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삼척시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노인복지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경로당포함)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7%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음	
	'14년	없음	
	'15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단위:천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운영	6,750	- 노인건강 및 복리증진사업 지속적시행 → <u>강원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일부 지원필요</u>	중
② 강원도게이트볼 대회참가	1,086	- 노인건강 및 복리증진사업 지속적시행	상
④ 노인회지회운영	2,864	“	상
⑧ 노인친선게이트볼 대회참가	2,310	“	상
⑩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사업	1,930	- 노인건강 및 복리증진사업 지속적시행을 위하여 일부사업 향후 변경필요	상
합 계	14,94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단위 : 천원, %)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594,850	%	600,696	%	570,623	%	
	전입금	25,000	4	30,000	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46,637	93	555,023	92	556,521	97	
	예수금							
	이자수입	20,509	3	15,589	2	13,901	2	
	기타수입	2,704	1	83	1	201	1	
지 출	합 계	594,850	%	600,696	%	570,623	%	
	비용자성사업비	39,744	6	44,175	7	14,94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5,106	94	556,521	93	555,683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존치필요
 - 2005년까지 5억조성후 2006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율 하락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제외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노인대학운영사업 : 강원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화(2015년 ~)
 - 삼척시민 기금후원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비 증대검토필요

2015회계연도 장애인 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2004년(조례제정일 2004년 5월 18일 조례제0459호,
조례개정일 2014년 7월 18일 조례제86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5	14	13	1	556	10	10	-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장애인연합회 등 2개 단체, 3개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됨
- 2015년 추진실적 (3개 사업, 13,065천원)

(단위 : 천원)

지원단체명(대표자)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3개 단체	3개 사업	13,065	
삼척시 장애인연합회(김진석)	「제13회 강원도장애인하나되기」 합창대회	9,360	
삼척시 장애인연합회(김진석)	제1회 장애인 세상나들이	1,875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삼척시지회(박천교)	시각장애인 역사문화체험 「반만년 역사와 조우	1,830	

○ 향후 조치계획

- 우리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하락으로 사업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방법을 통하여 기금조성을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총괄적 설명

- 기금설치목적이 적정하고 일반회계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공모를 통한 연 1~3개 사업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	15	93	14	13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장애인합창대회 (9백만원, 52명) ○시각장애인방송국체험 (2백만원, 180명)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계수련회 (2백만원, 40명)	○ 장애인합창대회 (9백만원, 52명) ○시각장애인방송국체험 (2백만원, 180명)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계수련회 (2백만원, 40명)	93%
'15년	○장애인합창대회 (9백만원, 40명) ○시각장애인역사문화 체험 (2백만원, 40명) ○장애인 세상나들이 (2백만원, 40명)	○장애인합창대회 (9백만원, 40명) ○시각장애인역사문화 체험 (2백만원, 40명) ○장애인 세상나들이 (2백만원, 40명)	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63조 및 삼척시장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 복지 증진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세미나 등 행사 지원 나.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마. 장애인 취업 지원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4년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 되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음
	'14년	없음
	'15년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주의) (현재 7명 위원 중 민간인 2명으로 1/3미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단위:천원)	존치 필요성	불가필성 정도
제13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	9,360	신축적 집행	상
제1회 장애인세상나들이	1,875	신축적 집행	중
시각장애인 역사문화체험	1,860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3,06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560,535	%	569,941	%	569,075	%
	전입금	50,000	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10,484	91	553,335	97	555,131	98
	예수금						
	이자수입	51		16,606	3	13,360	2
	기타수입					584	
지 출	합 계	560,535	%	569,941	%	569,075	%
	비용자성사업비	7,200	2	14,810	3	13,066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3,335	98	555,131	97	556,009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4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10억 조성을 목표로 적립 조성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조례제정일 : 2005. 1. 10.(삼척시 조례 제48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81	249	273	△24	1,757	286	370	△84	변경

※ 130백만원 15년 사업예산(지진가속도계 설치사업) 16년으로 이월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폭염쉼터 안내간판 설치사업 3백만원
 - 2015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 161백만원
 - 급경사지 안전성검토 용역사업 12백만원
 - 제설장비 구입 97백만원
- 잘된 점+9
 - 2015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을 통하여 급경사지 보수·보강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예방

- 폭염쉼터 안내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폭염쉼터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관리에 기여함
- 제설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겨울철 폭설 시 긴급 제설 작업을 실시함

○ 미흡한 점

-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금운영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미만임
- 이에 따라 위 두 사항을 정정하고 추후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도록 현지처분 받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기금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143	48%	450	273	6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00백만원) ○제설장비구입 (100백만원)	○ 지진해일 위험지구 대피 안내간판 제작 설치 (3백만원) ○ 도계읍 흥전교 날개벽 복구공사 (50백만원) ○ 지진해일 위험지구 대피 표지판 정비공사 (16백만원) ○ 제설장비 구입 (74백만원)	48%
'15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50백만원) ○폭염쉼터 안내간판 설치사업(20백만원)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사업(20백만원)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50백만원) ○제설장비구입 (100백만원)	○ 폭염쉼터 안내간판 설치사업(3백만원) ○ 2015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161백만원) ○ 급경사지 안전성검토 용역사업(12백만원) ○ 제설장비 구입 (97백만원)	6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비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삼척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삼척시조례 제483호)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 되는 비용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②참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
	'14년	해당없음	-
	'15년	기금의 과도한 사용 기금 운용심의회외 민간전문가 부족	강원도 종합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2015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	161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급경사지 안전성검토 용역사업	12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토록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030,367	%	1,923,969	%	2,029,858	
	전입금	192,774	9.5	211,167	11	230,500	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06,111	89	1,642,480	85	1,780,997	88
	예수금						
	이자수입	31,482	1.5	70,321	4	18,361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30,367	%	1,923,969	%	2,029,858	
	비용자성사업비	290,679	19	142,971	7	273,028	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97,207					
	예탁금						
	예치금	1,642,480	81	1,780,997	93	1,627,591	8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129,239	7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적립되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예산확보를 소홀히 하거나 기 적립 된 기금을 재난예방 등 필요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적립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타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으므로 우리시도 다른 시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금적립 및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함.

201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년도 (조례제정일 2004.05.18. 조례 제458호)

○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9	9	-	9	158	12	3	9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사업 목표 조성액(3억원) 미만으로 지출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집행없음			집행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삼척시 기금사업 적립 목표액(3억원)에 도달 할때까지 지출계획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삼척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58호)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50% 달성 (목표액 3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	기금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중복·유사 사업 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과징금, 적립금, 예치금 이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27,544	%	149,776	%	158,81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3,824	97	127,544	85	149,777	94
	예수금						
	이자수입	3,720	3	3,392	2	6	1
	기타수입			18,840	13	9,030	5
지 출	합 계	127,544	%	149,776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7,544	100	149,776	100	158,813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도달시까지 지속 적립

2015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삼척시성평등기본조례 제42조
- 설치목적 : 성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 설치년도
 - 2001년(조례제정일 : 2001년 1월11일 조례제0373호)
조례개정일 : 2007년 9월 3일 조례제0582호)
 - 2013년(조례제정일 : 2013년 1월11일 조례제0807호)
⇒ 삼척시 여성발전 조례 폐지,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 2015년(조례개정일 : 2015년 7월22일 조례제0919호)
⇒ 삼척시 양성평등조례 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81	32	28		1,287	29	2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성하고 있으며,
- 2020년까지 20억 조성 목표로 2007년까지 5억 조성후 2008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267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한마당 큰잔치 등 7개 사업 29백만원 지원
 - 2009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3개사업 11백만원 지원

- 2010년 아이낳기 좋은세상 홍보 등 7개사업 38백만원 지원
 - 2011년 365+1 여성이 행복한 삼척 등 5개사업 25백만원 지원
 - 2012년 손자녀 돌봄 친정.시어머니 시상 추진 등 10개사업 50백만원 지원
 - 2013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등 8개사업 45백만원 지원
 - 2014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회 등 7개사업 42백만원 지원
 - 2015년 가족사랑수기공모 등 6개사업 28백만원 지원
- 동 기금으로 여성지도자교육, 가족친화, 다문화가족지원 등을 실시하여 성평등 실현 및 정책추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회확대, 건강가정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재원으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	42	84	35	28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회 및 여성주간기념 홍보활동 (15백만원, 40명) ○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4백만원) ○ 다문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6백만원, 4가정) ○ 자원봉사 및 삼척홍보활동 (3백만원, 100명) ○ 성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 (5백만원, 10개소 192명) ○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4백만원, 26명) ○ 손자녀 돌봄 장한 조부모상추진 (5백만원,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회 및 여성주간기념 홍보활동 (15백만원, 40명) ○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4백만원) ○ 다문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6백만원, 4가정) ○ 자원봉사 및 삼척홍보활동 (3백만원, 100명) ○ 성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 (5백만원, 10개소 192명) ○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4백만원, 26명) ○ 손자녀 돌봄 장한 조부모상추진 (5백만원, 14명) 	84%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7백만원, 40명) ○ 여성성공인초청특강 (5백만원, 3회) ○ 행복한 결혼식 (6백만원, 4쌍) ○ 가족사랑수기공모및시상식 (5백만원, 22명) ○ 통통튀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은 내가 전문가 (5백만원, 11명) ○ 장애인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7백만원, 40명) ○ 여성성공인초청특강 (1,900천원, 3회) ○ 행복한 결혼식 (6백만원, 4쌍) ○ 가족사랑수기공모및시상식 (5백만원, 22명) ○ 통통튀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은 내가 전문가 (5백만원, 11명) ○ 장애인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10회, 116명) 	8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삼척시양성평등 기본조례제31조	양성평등촉진, 여성권익과 복지증진	양성평등을 목적으로하는 공익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음	
	'14년	없음	
	'15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여성지도자리더십 역량강화교육	8,000,000	신축적 집행	상
②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인식홍보캠페인	3,000,000	신축적 집행	상
③ 행복한결혼식	5,000,000	신축적 집행	상
④가족사랑수기공모 및 시상식	5,000,000	신축적 집행	상
⑤경력단절여성직업양성교육	5,000,000	신축적 집행	상
⑥ 장애인과 함께하는 차(茶)문화힐링체험	3,000,000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9,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205,045	%	1,322,989	%	1,313,220	%
	전입금	130,000	11	130,000	1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36,029	86	1,160,446	87	1,281,389	98
	예수금						
	이자수입	39,016	3	32,543	3	31,83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05,045	%	1,322,989	%	1,313,220	%
	비용자성사업비	44,600		41,600	3	27,9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60,445	73	1,281,389	97	1,285,320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7년까지 5억 조성후 2008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2020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적립 조성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농어업소득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삼척시 조례 제63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 설치년도
 - 2009년도 (2009. 01. 05. 조례 제636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5	134	10	124	1,129	109	300	△19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농어가 융자지원 : 10백만원 / 1농가
 - 융자금 회수 : 116백만원
 - ┌ 융자 원금회수 : 113백만원
 - └ 융자금 이자 : 3백만원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립의욕이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별농어가에 대하여 1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39	13%	300	10	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영세 저소득농가의 종묘 및 농자재 구입 등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기금용자사업 - 용자액 : 39백만원 - 사업자 : 4명	○ 기금용자사업 - 용자액 : 26백만원 - 사업자 : 3명	67%
'15년	○ 기금용자사업 - 용자액 : 300백만원 - 사업자 : 10명	○ 기금용자사업 - 용자액 : 10백만원 - 사업자 : 1명	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 (2009.01.05.조례 제636호 제정)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 어가소득향상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 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소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작물 : 채소,인삼,장뇌,가시오가피, 업나무,약초,과원조성 등 - 축산 : 한우입식,육우,낙농,양계,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 수산 : 양어장,양식어업,어구.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 양묘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개간사업) - 초지조성 - 농기계구입 -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소득 농어업 자립기반 조성 : 1농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성과분석 심의회 미개최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행유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어업소득기금	300,000,000원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농어업인 및 귀농 농업인의 자립화를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108,724	%	1,044,866	%	1,139,20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33,919	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52,685	89	1,022,724	98	1,135,930	99
	예수금						
	이자수입	22,120	2	22,142	2	3,275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8,724	%	1,044,866	%	1,139,205	%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86,000	4	39,000	4	10,000	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50			
	예탁금						
	예치금	1,022,724	96	1,005,516	96	1,129,205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음.
- 농어가에서 기금용자 한도액의 상향(10백만원 ⇒30백만원) 및 용자상환기간 연장(시설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건의가 있어 검토후 조례의 개정등 수렴 조치계획임

2015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10년 7월 설치 (조례제정일 2009. 3.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686	15	-	15	13,701	15	-	1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자금조달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이 2011. 5월 폐지
 - 집중 배분 지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이자수입만 발생할 뿐 재원조성이 없는 상태

- 기금 설치 목적이 적정하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의 문제점이 없는 등 기금 조성규모를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에 노력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 조성 중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시까지 지출계획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	-
'15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광고물 등의 정비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
 -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 음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	상
② 광고물 정비사업	-	-	상
③ 경관개선 사업	-	-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조성 옥외광고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 되던 지원금(폐지) 및 이자수입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3,550	%	13,686	%	13,70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281	99	13,414	99	13,686	99.9
	예수금						
	이자수입	136	1	136	1	15	0.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550	%	13,686	%	13,701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281	100	13,550	100	13,68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
-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있는 간판거리를 조성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기금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필요